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체정보 활용 병역의무자 신원 확인〉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23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6.
3. 회부연월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지문·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각종 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얼굴,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체정보 수집·이용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7조의7(생체정보를 활용한 병역의무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및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얼굴·지문 및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u> <u>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u>

현행	개정안
	<u>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u> 2. <u>입영 대상자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u> ② <u>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u>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u>

- ☐ 최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리입영 사건을 계기로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인도인접¹⁾ 과정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병역 행정 절차 수행 시 현재 본인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육안 확인만으로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가 본인임을 확정적으로 특정하는데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됨.

[대리 입영 사건 개요]

시 기	사 건 내 용
2024.6.2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인 병역 의무 회피자 대신 대리 입영자가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출원
2024.7.9.	병역 의무 회피자 대신 대리 입영자가 입영판정검사(입영 회피자 신분증 사용)
2024.7.16.	병역 의무 회피자 대신 대리 입영자가 입영(입영 회피자 신분증 사용)
2024.9.9.	병역 의무 회피자 수사당국에 범죄 사실 자수
재판결과	◦ 대리 입영자 : '25.7.26. 형확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병역 의무 회피자 : '25.4.11. 형확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 ☐ 개정안에 따르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방지하여 신원 확인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 참고로 현재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출입국 관리 등 행정 업무 수행 시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징집이나 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파견한 인도관과 입영부대의 장이 파견한 인수관이 상호 인계인수하는 과정을 말함.(출처 : 병무청 병역관련용어해설)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신원 확인 유사 입법례]

법률명	주요 내용
항공보안법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u>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u> 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u>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제6조(국민의 입국)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u>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 다만, 개정안에서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는 특별히 민감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²⁾

□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업무의 정확성 제고라는 공익적인 가치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권리 보호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